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몇 가지 교훈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작년 8월부터 여러 학술저널 또는 문학저널들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획호(특집호)를 발간하였다.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7권 제3호(2020년 8월) - 곽노완, 권정임, 금민/김창근, 김공회, 『문학들』 제61호(2020년 9월) - 류보선, 양선형, 이다희, 임정균, 『창작과 비평』 제189호(제48권 제3호)(2020년 9월) - 김현우, 양재진, 윤희식, 이일영, 『동향과 전망』 110호(2020년 10월) - 유종성/양재진 & 이일영, 전승훈, 『산업노동연구』 제26권 제3호(2020년 10월) - 안효상, 서정희/제갈현숙, 『경제와 사회』 통권 제128호(2020년 12월) - 백승호/양재진, 임운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기서 발표된 글들을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특히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글들에서 발견되는 주장이나 논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5가지 특징인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에 관한 교훈, 기본소득의 해방적 효과의 발현에 중요한 요소이자 완전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을 구별하는 데(또한 부분기본소득에서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사고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충분성에 관한 교훈, 부분으로 전체를 흔들고자 하는 기본소득 비판에 관한 교훈,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관한 교훈을 살펴본다.¹⁾

1) 기본소득 찬성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나 쟁점을 평가한 이전의 글들로는 강남훈(2010), 백승호, 이승윤(2018), 이건민(2020b)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해외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1.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관한 교훈

기본소득에서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핵심요소를 이룸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의 원리를 위협의 발생으로 인한 필요의 충족으로만 보는 입장(양재진, 2020a; 2020b; 제갈현숙, 2020)에서는 보편성과 무조건성은 용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위험과 필요의 발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위험에 처한 계층 또는 복지가 필요한 계층으로부터 무위험계 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사회의 자원과 소득을 이전시키기 때문에 역진적이라고 본다(양재진, 2020a; 2020b; 제갈현숙, 2020).

과연 그러할까? 달리 보아야 한다. 첫째, 위의 주장은 기본소득의 ‘지급’만을 일면적으로 볼 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여(부담)’는 (의도적으로) 도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기여(부담)’와 ‘지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고소득층·고자산층으로부터 저소득층·저자산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은 ‘지급’ 면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기여(부담)’ 면에서 위험(필요) 발생과 무관하게 ‘기여능력(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여(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에 의존함 없이 확실히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기여(부담)’도 ‘지급’도 전체 사회구성원을 아우른다는 ‘보편성’ 때문에 기본소득은 소득불평등을 비롯한 각종 불평등의 각 개인의 격차를 전 방위적으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제를 작동시킨다. 물론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수당 역시도 위험(필요)의 식별과 인정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특정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힘이나 정도는 각 제도의 급여수준과 성숙도, 수급층과 비수급층의 소득분포, 가구구성, 수급률, 사각지대 정도 등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들보다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강조 지점은 현존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들이 다른 변수들과 요소들에 따라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매우 상이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는 것과는 달리,²⁾ ‘기여(부담)’와 ‘지급’ 면에서의 ‘보편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기본소득은 다른 변수들과 요소들에 의해 크게 좌우됨 없이 소득불평등을 확실히 개선시킬 수 있으며, 세율, 지급수준 등 몇 개의 모수들에 대한 정보만 알면 소득불평등 개선 정도에 대한 사전적 예측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립적인 특성과 독자적인 지향을 갖는 ‘기관 없는 신체’로서 기본소득을 파악하는 것(류보선, 2020)은 물론 여러 심오한 의미를 갖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은 “자동화된 불평등”(유뱅크스, 2018)이라는 책 제목에 기대어 달리 표현하자면, “자동화된 평등” 기제를 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재진(2020a; 2020b)은 기존의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 복지의 원리가 위험 발생에 따른 ‘욕구의 충족’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위험(필요)의 발생’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되기에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 역시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소득은 “수급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의 확장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주의는 무차별성

2) 이는 맥락에 따라서는 상대적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현존 제도들의 구체적인 구성과 배치를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복지정치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기본소득의 도입과 같은 외부충격(?)이 기존 제도들에서 요구되었던 내부개혁을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6에서 자세히 다룬다.

indiscriminateness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양재진(2020a, p.62)의 지적 자체는 타당하다.³⁾ 하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기여해온 반면, 기본소득은 오히려 그것들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회부조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부상조에 입각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복지의 수혜층과 기여층(부담층)을 날카롭게 나눔으로써 인기 없는 정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지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부상조와 사회연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Korpi and Palme, 1998; Gelbach and Pritchett, 2002; Kasy, 2018).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은 자신의 기여를 토대로 하지만, 위험이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국민연금의 A값(균등부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연금 크레딧 제도 등과 같은 요소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부상조와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레짐에서 잘 드러나듯 이 제도의 기본적인 속성, 곧 기존의 노동 경력과 지위, 소득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소득비례적(earnings-related) 속성으로 인해 강력한 사회계층화 효과를 낳는다(Esping-Andersen, 1990). 사민주의 복지국가 레짐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기존의 제도로는 보편적인 사회수당을 꼽을 수 있는데(Esping-Andersen, 1990), 이는 사실 위험 발생에 따른 ‘육구의 충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권리의 실현’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백승호, 2020). 여기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보편적인 사회수당을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공유부 배당의 권리’와 ‘사회권의 실현’에 입각하여 전 인구층으로 전면 확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백승호, 2020), 당연히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Kasy, 2018; Mays, 2019). 이와 관련하여, 정상훈(2020, pp.70-71)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은 이웃사촌이나 지역사회다. … 충분한 기본소득이 있다면 우리는 돈 버는 노동에 대한 압박, ‘먹고 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 정신이다.” 반대방향으로 보자면, 모두가 모두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보편적으로 ‘기여(부담)’는 능력에 따라 ‘급여’는 평등하게 나누자고 합의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대는 단지 이론적 예측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실시된 기본소득 (관련) 실험들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공동체효과들과 신뢰 수준의 향상 등의 실증적 증거로 일관되게 뒷받침되는 것이기도 하다(B-MINCOME and Ajuntament de Barcelona, 2019; Kangas et al., 2019; Kela, 2020).

마지막으로 김창근(2020)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비판하며, 특히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문제시한다. 그는 “물론 모든 사회적 노동은 ‘결합’과 ‘협력’(협업과 분업)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협업과 분업은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협업과 분업이 아무리 생산성을 높여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더라도, 그러한 협업과 분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익을 자신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협업과 분업의 방법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식과 기술 덕분이다”라고 말한다(pp.98-99). 또한 “노동가치론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이윤도 노동에서 나온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

3) 이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기본소득을 ‘새로운 보편주의’를 가능케 하는, 그리고 ‘기존의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18년 핀란드 탐페레에서 개최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2018 BIEN Congress)의 제목은 “기본소득과 새로운 보편주의: 21세기에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기”였다.

무리 높고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개별 자본의 이윤이 양인 이상, 어떤 노동자도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가치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각주 15).⁴⁾ 이러한 사고틀을 고수할 경우, 자발적 실업자에게까지 제공되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임금 이론을 이용한 고용지대 주장을 통해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당화를 피한 판 파레이스의 시도에 대해 일부 타당한 비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김창근(2020)의 주장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판 파레이스의 고용지대 주장이 기본소득론을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이 기본소득 일반에 대한 비판일 수는 없다. 기본소득의 원천은 공유부(공통부, 공동부)이며 공유부 수익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으로서(금민, 2020a, p. 6),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리에 맞다. 이는 자본,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공통부’(공동부, 공유부) 역시 생산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생산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강남훈, 2019; 금민, 2020a; 2020b; 류승연, 이승훈, 2020), 노동만이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하는 맑스주의적인 노동가치론의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본소득론자들은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정당성을 판 파레이스의 고용지대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강남훈(2019), 금민(2020a; 2020b) 등이 제시한 기본소득의 원천으로서 ‘공통부’(공동부, 공유부)에서 찾는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자,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무급노동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둘째, 노동가치론에 기반하여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비판하는 것은 노동소득 불평등을 비롯한 현존하는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개혁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류보선(2020, p. 29)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잉여이윤 거의 전체가 자본가에게 쏠려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이 행하는 노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몫이 과잉 계상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인류 전체가 만들어 낸 공통의 부가 점점 더 극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유종성 외 1인(2020, p. 5) 역시 “오늘날 기여에 따른 몫이 공정하게 분배되기보다는 지나친 과다보상과 과소보상으로 인한 임금과 소득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무급노동의 광범위한 존재를 고려하면 노동을 조건으로 하고 기여를 측정하여 기여에 따른 분배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불공정과 불평등을 인정하는 논리가 된다.”고 지적한다.

셋째,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정태적인 이해와 개인(자기) 책임 논리 역시 문제이다. 김창근(2020, p. 86)은 “고용노동자들의 일자리 “독점”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비자발적 실업자들일 뿐이고, 자발적 실업자는 아니다. 즉, 자발적 실업자는 실업과 “관련된 사회구성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실업자는 일자리가 주어져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현실에서 자발적 실업자와 비자발적 실업자의 경계와 그 구분이 모호하고 허위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자본주

4) 맑스주의적인 노동가치론 틀 내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시각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는 너무 단순한, 통속적인 이해일 수 있다. 사회적 총자본뿐만 아니라 개별 자본의 경우에도, 개별노동자 각각에 대해 많이 착취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 아니라 총이윤의 극대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비록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특정 자본은 분할지배전략을 써서 일부 노동자 또는 노동계층으로부터는 그(들)의 기여나 성과에 비해 더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고서라도 다른 노동자 또는 노동계층으로부터 더 많이 착취 혹은 초과착취를 함으로써 더 큰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의 사회에서, 그것도 현재와 같이 실업이 만연하고 구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게다가 마땅한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재의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 ‘자발적 실업자’ 역시 단순히 그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선택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타입’ 자체가 ‘자발적 실업자’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아서는 더욱 안 된다. 설령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아예 (유급)노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노동의욕이 (거의) 없는 것 역시 온전히 그 사람의 ‘자발적’ 선택과 선호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전이나 환경, 우연 등의 그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도모히로, 2019, 5장). 궁극적으로는, 공유부 배당론에 입각할 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기본소득의 개별성에 관한 교훈

양재진(2020a)은 소득재분배 효과 면에서 기본소득의 개인 단위 지급을 문제시한다. “그나마 개인 단위에서 보이던 재분배 효과는 가구 단위로 기본소득 수령액을 재환산할 경우 최상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라진다. 개인 단위에서는 중산층 가정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나 전업주부가 모두 저소득이나 무소득자로 분류된다. ‘무니만’ 저/무소득자인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통계적으로는 양의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양극화가 완화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을 가구 단위로 재배치하면 어떻게 될까? 소득재분배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p. 66) “소득활동 여부나 소득의 크기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생활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면 양극화 해소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저소득 혹은 무소득으로 나타나는 개인도 사실은 중산층 가구원인 경우가 많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빈곤이 집중되어 있다. 가구원수가 많은 중산층은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보다 기본소득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pp. 66, 68)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할까?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자.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10%의 정률소득세를 바탕으로 연 360만 원(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로, A 가구에는 연 소득 1억 원인 a와 연 소득이 0인 b가 생활하고, B 가구에는 연 소득이 각각 5천만 원인 c와 d가 생활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 가구와 B 가구 모두 연 소득 1억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72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즉 가구원수와 가구의 총소득이 모두 같은 이상, 가구 내 소득분포의 양상(저소득자나 무소득자의 존재 여부,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 등)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동일하다.⁵⁾ 만약 가구 단위로 1,000만 원씩 세금으로 걷고 7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이 경우에도 ‘가구 단위’에서의 소득재분배를 보자면, 기본소득의 형태로 개인 단위로 지급하나 아니면 가구 단위로 지

5) 양재진(2020a)은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고소득층 가구 내 저소득자 내지 무소득자에 주목하도록 환기한다. 그러나 그 저소득자 내지 무소득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소득자가 기본소득 제도를 위해 기여(부담)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양재진 교수가 빠져있는 재정적 ‘오해’, ‘환상’ 내지 ‘착시’는 말끔히 제거된다.

급하나 경제적 손익 면에서는 동일하다. 여기서 우리가 가구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젠더 평등을 추가로 고려한다면? 물론 현실에서 가구 내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의 크기와 상관없이 젠더 평등한 삶을 영위하는 가구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가구 내 가구원들의 소득이나 자원 격차가 불균등함으로써 가구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고착화되거나 강화되는 경우에 가구 단위로 지급되느냐 개인 단위로 지급되느냐가 어떠한 효과를 낼 것인가는 점이다. 예컨대 A 가구의 경우, 만약 가구 내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에 거의 비례하여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가구 단위로 지급될 경우에는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전무한 반면, 개인 단위로 지급될 경우에는 d의 소득이 0에서 연 360만 원으로 늘어남으로써 d가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거나 그러한 관계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된다. ‘개인 단위’ 지급이 젠더 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바로 이것이다(Miller, 2017; Kasy, 2018; Miller, Yamamori and Zelleke, 2019).

두 번째로, A 가구에는 연 소득 1억 원인 a와 연 소득이 없는 b가 살고, B 가구에는 연 소득이 각각 5천만 원인 c와 d가 살며, C 가구에는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e가 산다고 가정하자. 위의 예와 달라진 유일한 점은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1인 가구인 C 가구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1인당 평균 소득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가구원수 면에서는 서로 다른 가구들의 경제적 손익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A 가구와 B 가구 모두 연 소득 1억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72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되는 반면, C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3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가구 단위’ 면에서, 2인 가구인 A 가구와 B 가구는 280만 원 손해인 반면, 1인 가구인 C 가구는 140만 원 손해이다. 1인당 평균소득이 같을 경우, 가구 단위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가구원수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함을 알 수 있다. ‘개인 단위’ 면에서, 2인 가구인 B 가구에 속한 c와 d, 1인 가구인 C 가구에 속한 e는 정확히 동일하게 각각 140만 원 손해이다. 가구 내 가구원의 수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이 동일할 경우 개인 단위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크기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 in consumption}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연 소득 5천만 원이며 1인으로 구성된 C 가구(e가 생활), 연 소득 1억 원이며 4인으로 구성된 D 가구(f, g, h, i가 생활하며 f만이 소득을 번다고 가정), 연 소득 2,500만 원이며 1인으로 구성된 E 가구(j가 생활)를 비교해보자. 여기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균등화지수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채택해보자.⁶⁾ 그러면 C 가구와 D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균등화지수를 활용했을 때 경제력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구에 대해 기본소득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D 가구와 E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1인당 평균소득 면에서는 같지만 가구원수 면에서는 서로 다른 가구들의 경제적 손익을 다시 한번 비교할 수 있다. 또한 C 가구와 E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가구원수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1인당 평균소득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가구들의 경제적 손익을 비교할 수 있다.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C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3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140만 원 손해이다. D 가구는 연

6) 물론 ‘가구원수의 제곱근’이 가장 좋은 균등화지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널리 쓰이는 지수라 여기서 선택되었을 뿐이며, 다른 균등화지수를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는 달라질지언정 아래 논의에서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소득 1억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1,44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440만 원 이익이다. E 가구는 연 소득 2,500만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25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3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110만 원 이익이다. 균등화소득 면에서는 C 가구와 D 가구가 동일하지만, 기본소득은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제도이기에 가구원수가 1명으로 적은 C 가구는 140만 원 손해인 반면, 가구원수가 4명으로 많은 D 가구는 440만 원 이익인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가구 단위 지급이 아니라 개인 단위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보았을 때 기본소득은 역진적일 수 있다고 하는 양재진(2020a)의 주장의 여러 논거 중에서 타당한 (아마도 거의) 유일한 논거일 것이다. D와 E 가구를 비교해보면, 위에서 C 가구와 A, B 가구를 비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평균소득이 같을 경우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가구원수에 정확히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4명인 D 가구는 440만 원 이익/1명인 E 가구는 110만 원 이익). C와 E 가구를 비교해보면, 가구원수가 동일할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줄어들거나(순수혜층의 경우) 기여(부담)가 늘어나는 반면(순기여층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늘어나거나(순수혜층의 경우) 기여(부담)가 줄어든다(순기여층의 경우)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연 소득 5천만 원인 C 가구는 140만 원 손해/연 소득 2,500만 원인 E 가구는 110만 원 이익).⁷⁾

위에서 10%의 정률소득세를 바탕으로 연 360만 원(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가구원수와 가구의 총소득이 모두 같은 이상, 가구 내 소득분포의 양상(저소득자나 무소득자의 존재 여부,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 등)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동일하다. ② 1인당 평균소득이 같을 경우, 가구 단위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가구원수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한다. ③ 가구 내 가구원의 수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이 동일할 경우 개인 단위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크기도 동일하다. ④ 가구원수가 동일할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줄어들거나(순수혜층의 경우) 기여(부담)가 늘어나는 반면(순기여층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늘어나거나(순수혜층의 경우) 기여(부담)가 줄어든다(순기여층의 경우). ⑤ ‘1인당 평균소득’이 아니라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균등화소득’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의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경제적으로 불리한 반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해진다. 이러한 특성은 세율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서는 언제나 성립한다. 물론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정률소득세-기본소득의 형태로만 도입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렇게 발견한 5가지 사실은 일부 수정될 수 있다(“동일하다”에서 “거의 동일하다”로, “정확히 비례한다”에서 “거의 비례한다”로). 하지만 전체 기본소득 정책패키지가 진보적, 개혁적, 해방적인 형태일 경우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사실의 기본적인 성질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7) 양재진(2020a, p.66과 표 1)은 LAB2050 연구보고서(이원재 외, 2019)에서 제시한 ‘월 30만 원 국민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인한 가구 형태별 손익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고자 시도한다. 우선 LAB2050에서 제시한 기본소득 모델이 기본소득 일반을 결코 대표할 수 없으며, 이 연구보고서에서 도입한 소득재분배 효과 방법에도 문제가 많음을 지적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이견민(2019)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19) 참조). 다음으로 LAB2050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에 관한 양재진 교수의 평가에 대해서 재평가해보자. 경제적 이익이 큰 순으로 총 5가지 가구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국민기본소득제로 인하여 ‘연소득 1억 원 4인 가구(외벌이)’는 연 352만 6,000원 이익, ‘연소득 9,000만 원 3인 가구(맞벌이)’는 연 314만 2,000원 이익, ‘연소득 3,500만 원 노부모 부양 3인 가구’는 연 168만 4,000원 이익, ‘무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는 손해도 이익도 없음, ‘연소득 5,000만 원 청년 1인 가구’는 41만 원 손해를 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기본소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소득 지급액수만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대체된다는 가정’에 크게 기인한 것이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되더라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전혀 대체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연소득 3,500만 원 노부모 부양 3인 가구’는 609만 원이 더 증가하여 연 777만 4,000원 이익으로, ‘무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는 720만 원이 더 증가하여 연 720만 원 이익으로 바뀐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 두 가구의 경제적 이익은 각각 1위와 2위로 올라서며 3위의 두 배 이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도외시한 채 마치 ‘기본소득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가구 단위로 볼 때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미약해진다거나 심지어 역진적이라고 보는 양재진 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위에서의 논의는 전체 기본소득 정책패키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인당 평균소득’이 아니라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균등화소득’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의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경제적으로 불리한 반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해진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가구원수가 적으며 고소득층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은 경향이 있다는 사회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까? 혹자는 이러한 사실을 들면서, 기본소득을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급여 지급액도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필자는 아래의 이유로 (비록 연령 범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는 열려 있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하며 급여 지급액 면에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기본소득의 원천은 공유부(공통부, 공동부)이며 공유부 수익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으로서(금민, 2020a, p. 6),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리에 맞다. 둘째, 가족의 형성을 촉진할 유인을 만드느냐 가족의 해체를 촉진할 유인을 만드느냐의 이슈에서 개인 단위로 균등 지급하는 것이 낫다. 가구원수는 고정불변의 것이 결코 아니며,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의 경우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함께 생활할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Miller, 2017). 셋째, 기본소득은 진공 상태에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며,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그리고/ 또는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정책이 이미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마저 가구 단위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기본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그러한 정책을 늘리는 방식 일변도로 나아가는 것은 생태-환경을 고려했을 때에도 부적절하다. 예컨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많이 만드는 식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1인 가구의 1인당 에너지 소비가 2인 이상 가구의 그것에 비해 많다(김민경, 남현정, 정명구, 2020)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은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함께 생활할 유인을 낳는 제도라는 점에서 1인 가구 급증 현상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보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소득의 개별성은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이라는 다른 속성들과 결합하여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향한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새로운 기획이 되게끔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현금성’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 기본소득의 현금성에 관한 교훈

양재진(2020a, pp. 68-71)은 기본소득의 현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현금은 오·남용되기 쉽고,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회서비스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현

금급여와 사회서비스 비중 면에서 현금의 비중이 매우 커지는 경도된 복지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세 가지 비판에 대해 하나씩 반비판해보자.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현금이 지급되더라도 수급자들이 현금을 오·남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기본소득 관련 전 세계 실험들과 브레흐만(2017) 등에서 잘 보여주었으므로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겠다. 첫 번째로, 어느 사회에서나 현금을 오·남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오·남용 가능성을 들어 기본소득의 현금성을 공격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현금소득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소득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사회수당, 공공부조, 공적연금,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는” 오·남용 가능성을 들어 그것들의 현금성을 문제 삼지는 않기 때문이다(이건민, 2017).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금민, 2020b) 돌려주는 정당한 권리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본다면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회서비스가 후퇴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이렇게 되리라고 미리 상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부당전제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이건민, 2020b, p. 110). “코르피와 팔메가 보여준 바와 마찬가지로, 동태적으로 볼 때 복지지출을 위한 예산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며,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한 문진영, 김윤영(2015)의 연구는 “장기적으로 볼 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관계가 있음을, 즉 어느 하나의 증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하나의 증가를 견인하는 관계Granger causality가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이건민, 2017).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기본소득과 공공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공공사회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장화된다면, 기본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의 액수는 (동태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렴한 액수라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공사회서비스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에 접근하는 데 일정 정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증진하고 범죄가 감소하며 사회갈등이 줄어들고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공공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공공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이건민, 2020b, p.110).

세 번째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 비중 면에서 현금급여의 비중이 매우 커지는 경도된 복지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자. ‘GDP 대비 현금급여 지출’을 한 축으로 ‘GDP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을 다른 한 축으로 할 때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가 남유럽보다도 훨씬 더 치우친 현금급여 중심 복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윤홍식(2017)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우려 제기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정태적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잘못 이해할 경우, 마치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복지체제가 남유럽형에 가깝게 될 것이다’라는 그릇된 인상이나 인식에 빠질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에 속한 제도들이 하나가 아니듯, 현금급여에 속하는 제도들도 하나가 아니다. 여기서 ‘GDP 대비 현금급여의 비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금급여의 구성’이 중요하다. 남유럽형 복지체제는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비중이 큰 복지체제로, 이로 인해 사회계층화 효과가

큰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복지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와 사회통합 정도도 사민주의 체제에 속한 국가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기본소득의 ‘보편성’으로 인하여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와 사회통합 정도도 향상하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공공사회서비스를 확대하거나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여기서 개별 제도나 정책 수준에서의 ‘보편성’이 한 국가의 복지체제 전반의 ‘보편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김영순, 2012). 하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대폭으로 대체하거나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동반하여 새로운 보편주의 제도로써 기본소득을 1층으로 튼튼히 쌓아올리는 방안(백승호, 2020; 유종성, 2020)이 보편적 복지체제를 강화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상술한 기본소득의 ‘보편성’이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다면 더욱 그렇다.

현금급여로서 기본소득 지급보다는 사회서비스 형태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양재진(2020a, 각주 3)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본소득론자의 주장대로 공유부를 모두가 똑같은 액수로 나누어 갖기 위해서는 현금급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공유부의 분배에서 사회서비스의 수혜 기회를 동일하게 받는 형식으로 나누는 것도 시민권으로서 기본소득 배분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보편적 기본서비스(UBS)가 우리 시대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 논리이기도 하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Gough, 2019; Coote, 2021).

주요한 사회서비스가 반드시 ‘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무료’^{free at the point of use}여야 한다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주창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지만, 보편적 기본소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공공사회서비스의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우리는 여기서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관련한 후속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에는 유보적 또는 적대적 입장을 취한 것과는 달리(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Coote, 2021),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관련한 최초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을 병행해서 발전해야 할 상호보완적인 정책으로 이해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Porter, Reed and Percy, 2017). 그들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옹호자들은 자유와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화폐적 분배를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필요, 그리고 특수한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Porter, Reed and Percy, 2017, pp. 13, 51).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유, 자립, 자율성, 선택, 권한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현금성’이 갖는 장점은 결코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Huws, 2020; Standing, 2020). Standing(2020)은 기본소득은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Huws(2020)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립과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젠더평등에 기여하고, 낙인효과, 오류, 시간 지체를 낳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분배할 수 있으며, 빈곤, 사회연대, 노동, 일자리의 질, 산업구조, 자립과 존엄성,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관료조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상훈(2020,

pp. 39-40)의 지적 역시 경청할 만하다. “기본소득은 사전성을 갖는다. 이것은 다른 공공사회복지서비스와 크게 다른 특징이다. 사실 젊고 건강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 성인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나이가 들거나 병이 나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야 사회복지서비스가 등장한다. ‘일이 벌어지면’ 그때 도와준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먼저’ 모두에게 지급된다. 사후적으로 돕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원상회복’이 목표다. 물론 이런 공공서비스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 누구라도 역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문학은 개인의 자유, 자립, 자율성, 선택, 권한을 제고함으로써 여러 차원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본소득의 해방적 잠재력을 가장 직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양선형(2020)은 기본소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본과 문학이 동떨어져 있고 작업자의 가난이란 불가피하다는 식의 인식은 현장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생계의 책임과 부채를 온전히 떠맡”기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적 진전을 가로막는 회피의 수사로 활용된다”는 그의 지적(pp. 62-63)과 “문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준 현재의 제도에 타성적으로 귀속되지 말고 성공한 사람들의 위치에 걸맞는 책임, 제도적인 진전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p. 64)에서 필자는 기본소득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그의 지적과 요구는 비단 문학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전 영역에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본조건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이를 4일만에 거의 다 써 버린 경험과 관련하여 이다희(2020)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일 동안 나를 둘러싼 공기가 부드러워졌고, 나는 마주치는 사람들과 상냥한 미소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첫 시집 발간을 앞두고 그 무게감에 한껏 예민해져있었지만, 4일 동안은 예민한 내 마음이 조금 견딜 만하다고 느껴졌다. 소비 계획을 세운 적이 없음에도 모든 소비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나에게 그 4일은 묘한 진공 상태로 느껴졌다”(p. 68).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기본소득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우리는 일회성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단기간에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맞이한 그의 모습을 통해 정기적인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우리 각자의 생활에 얼마나 경이로운 전환이 찾아올지를 자연스레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임정균(2020)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복지에 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특정 이념에 기대지 않고, 순수하게 내 마음에 끌리는 복지정책이나, 정책의 기초, 주장들은 결국 나의 생활 조건에 유리한 것들임이 자명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분배, 그것이 정의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한다(p. 76). 또한 “생계에 문제가 없다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이걸 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of labour)라고도 부르는 모양인데 보편적 복지가 행해지면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아니, 무슨 일이든 좋아서 하고 싶다.”라고 말한다(p. 77). 필자는 이에 크게 공감하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은 미래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국가의 상을 7에서 짧게나마 제시해보았다.

류보선(2020)은 기본소득이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지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려 구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의 원리가 ‘개인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만들어 낸 것 중 상당 부분까지도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현재의 분배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며(pp. 28-29), 기본소득이 “나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나서” “기관 없는 신체”로서의 독자적 지향점을 향해 작동하는 정책이” 되었기 때문이다(p. 32). 그는 ‘기관 없는 신체’라는 속성 때문에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체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의 이해타산적이고 냉소적인 현존자들의 심상과 ‘구별 짓기’라는 통치성의 원리가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을뿐더러 설령 현실에서도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논리와 원리에 기반한 실천들과 구조들로 인해서 기대했던 변화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도 이해하고 있다(pp. 34-35). 그럼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또는 크게) 보인다고 해서 바람직한 변화와 전환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현실주의와 냉소주의, 불간섭주의와 대기주의에 빠져 ‘신중한 무위’로 일관하는 태도는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실패이며 더 큰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류보선(2020, p. 36)의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기본소득은 불가능성과 가능성 사이에 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다. 설사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구체화, 현실화시키려면 기본소득이라는 단절 혹은 전회가 없을 경우 지구 전체가 직면할 재난적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응시와 정의로운 분배가 가져올 전미래에 대한 명량한 전망과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모른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에 지적은 “역설적이지만 재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재난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다”고 “예방행동(선제공격)의 발상을 과감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참된 행위는 그에 관해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투명한 상황 속의 전략적 개입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참된 행위가 지식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상상을 현실화시켜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지구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행위이며, 비록 기본소득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그 참된 행위의 반복이 결국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세상을 도래시킬 수 있겠기 때문이다.”

4. 기본소득의 정기성에 관한 교훈

이일영(2020)은 김종철(2017; 2020)의 영향을 받아 기본자산을 “생산적 활용에 필요한 공유 자산”으로 재정의하면서, 동아시아 모델이 기존의 대기업 중심 산업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기본자산제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기본자산은 자원의 탕진을 막고 사회적 상속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주거, 교육, 토지(농지) 등 실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p. 143)고 보며, 그 세부방안으로 청년 주거 기본자산제, 청년 깎이어 제도, 청년 농지 기본자산제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가 제안하는 ‘청년 기본자산제’가, 그리고 기본자산제 일반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청년 기본자산제’는 기본소득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키는 힘이 약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겨냥하는 대상의 범위, 정책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 시스템의 범위, 정책이 미치는 (파급)

효과의 범위 모두에서 그러하다.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알바레도 외, 2018)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으며, 이는 국가의 자산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의 증가(공공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의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a). 이를 감안한다면, 민간에서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자산을 재분배함으로써 자산과 소득의 고른 재분배를 피하고자 하는 기본자산과 같은 기획보다는 사회 전체의 자산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줄이고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면서 이를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기획(기본소득; 특히나 공통부기금 조성이나 공유지분권 설정과 결합한 기본소득)이 자산과 소득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b). 기본자산론자들은 자산재분배 효과를 기본자산의 커다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기본자산은 민간자산 대비 공공자산의 비중을 높이지는 못한다는 점, 그리고 민간 부문 내에서 자산을 재분배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불평등이 다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자산제를 통한 자산재분배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기본자산으로 지급되는 지급액 수준이 낮거나 자산에 대한 누진적인 과세 방안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한계는 더욱 뚜렷해진다(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20).

둘째, 현재 청년 문제의 해결법을 청년들이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청년들이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게끔 ‘청년 기본자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동아시아 모델에 내재한 농업, 자영업, 건설업, 중소 제조업 등 소경영적 영역의 현대화와 안정화를 도모”(이일영, 2020, p.143)할 수 있다는 기대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실업 및 니트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변화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시구조적, 종합적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셋째, 자원의 탕진을 막기 위해 실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만, 그것도 특정 용처로 제한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부장적이며 기본자산 주창자들이 강조하는 ‘거시 자유(macro-freedom)’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애커만, 알스톡, 2010). 현 시점에서 개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나 정책결정자들이 아니라 바로 개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용처 제한은 돌봄, 희귀난치 질환 치료 등 개인에 따라서는 현재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자산의 활용법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서정희, 2021). 또한 ‘생산적 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고이을 악성부채에 대한 조기 상환의 가능성도 가로막음으로써, 어떤 청년의 경우 용처 제한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서보다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삶의 불안정성과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즉 용처 제한 조치가 없었다면 기본자산을 이용하여 당장에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갚음으로써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었을 고율의 부채를 짊어진 어떤 개인의 경우, 용처 제한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높은 부채 부담을 떠안은 채 생활해야만 한다.

넷째, ‘생산적 활용’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고 허위적일 뿐더러,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을 구분한 후 전자만을 허용하면서 특권화하는 방식은 생산주의와 성장주의라고 하는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기 쉽다. 그리고 생산주의와 성장주의의 이러한 고수는 현재의 극심한 노동, 생태, 젠더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기본소득과는 달리 기본자산제의 구상에서는 노동, 생태, 젠더 등의 차원에서 사회적, 생

태적 전환을 추동하겠다는 기획이 체계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물론 ‘청년 농지 기본자산제’가 지속가능한 생태 농업의 주체를 육성함으로써 생태적 전환에 일부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생태세-생태배당,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농민기본소득’(농업참여소득), 생태적 농업에 대한 지원 등의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 진영의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다.

여섯째, 기본자산제(기본자산제도의 일반적 형태이든, 김종철(2017; 2020), 이일영(2020) 식의 변형된 형태이든)는 지분이 소진된 이후의 삶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기본소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다(서정희, 2021).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기본자산제 지지자들이 희망하는 자립적이고 생산적인 주체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자산은 기본소득을 필요로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5. 기본소득의 충분성에 관한 교훈

기본소득의 충분성에 관한 교훈은 최초 도입 시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은 액수의 부분기본소득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 중국에는 생계 영위에 충분한 액수의 완전기본소득이 되어야 기본소득의 해방적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은 어찌 보면 조금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모순이 아니다. 오히려 이 둘이 함께 할 때 이른바 ‘기본소득의 불가능성 정리’를 들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불가능성 정리’란 “기본소득은 지급수준이 너무 낮아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거나, 지급수준이 너무 높아서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다”라는 주장이다(Groot, 2004). 즉 너무 낮은 액수의 기본소득은 사회적 최저선(social minimum)으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지지받기 어려우며, 너무 높은 액수의 기본소득은 노동공급을 급격히 줄임으로써 경제적,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이건민, 2017). 이러한 ‘불가능성 정리’는 부분기본소득과 완전기본소득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본소득 전체를 비판하거나 기각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논리 중 하나다.

처음부터 충분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작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따라서 ‘불가능성 정리’에 대해서 우리는 당장에 도입될 수 있는 부분기본소득도 기본소득과 정합적인 다른 제도들과 함께 할 때 저소득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승호(2020, 표 2)는 2020년 기준으로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 추가 모델에서의 수급액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월 30만 원이라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많은 논자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을 ‘탈노동’ 혹은 ‘탈노동화(delaborization)’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기본소득을 기술의 발전과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위치 짓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양재진, 2020a, pp. 71-74; 임운택, 2020, pp. 86-90; 제갈현숙, 2020, pp. 145-147).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는 문제가 많다. 첫째,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일

<표 >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 추가 모델에서의 수급액(2020년 기준)

	현행 소득보장제도(A)	A+30만 원 기본소득
생계급여(1인)	월 52만 원	월 52~82만 원
(2인)	월 90만 원	월 90~120만 원
(3인)	월 116만 원	월 116~146만 원
기초연금	월 30만 원	월 30~6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월 40만 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 동안) 6개월 이후는 없음	월 50~80만 원(6개월 동안) 6개월 이후는 30만 원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연간 150만 원	연간 360~510만 원
	홀벌이가구 최대 연간 260만 원	연간 360~62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연간 300만 원	연간 360~660만 원
실업급여	정규직 월 평균 198만 원(210일) 비정규직 월 평균 180만 원(150일)	정규직 월 228(198+30)만 원 비정규직 월 210(180+30)만 원

출처: 백승호(2020, 표 2)

차적인 논리는 사회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바로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찾아진다(금민, 2020b; Standing, 2017, Ch.9; 2020). 기본소득은 사회적 상속의 원리에 따른 커먼즈 배당으로서, 커먼즈로부터 발생하는 정당한 몫을 모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금민, 2020b; Standing, 2020). 또한 기본소득은 다른 정책대안들에 비해서 사회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다섯 가지 사회정의 원칙, 곧 보장차등 원칙, 가부장주의 검증 원칙, 자선이 아닌 권리 원칙, 생태적 제약 원칙, 존엄한 일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킨다(Standing, 2017, Ch.9).

둘째, 기본소득은 결코 기술진보에 대한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술진보의 과실을 일부가 독점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기술진보의 성과 중 모두의 기여 혹은 몫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자는 기획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기술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인에게 해왔던 방식, 즉 그것의 성과는 전혀 분배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각 개인이나 가구에 차별적으로 미치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교육, 훈련 등에서 가부장적인 개입으로 일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기본소득은 각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 훈련, 역량 등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사회투자’라 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을 ‘탈노동’ 혹은 ‘탈노동화’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탈노동사회에서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탈노동사회에서도 기본소득은 필요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탈노동 개념에 적합하다.”, “기본소득은 탈노동을 초래한다.” 등의 주장, 명제 혹은 프레임에 갇혀서 사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독자들 역시 이러한 주장, 명제 혹은 프레임에서 기본소득을 사고할 것을 주문하고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일차적으로 사회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정의에서 발견됨은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탈노동사회가 도래하기 이전인 지금 여기에서도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에 노동, 생태, 젠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Desai and Palermo, 2019; Gilbert, Huws and Yi, 2019; Howard, Pinto and Schachtschneider, 2019; Mays, 2019; Miller, Yamamori and Zelleke, 2019), 노동, 생태, 젠더 등의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Huws, 2020; Standing,

2020). 아울러 최소소비수준에 미달하는 액수의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급격히) 감소시키리라고 볼 수 없음은 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그리고 2008~2009년 나미비아 실험, 2012~2014년 인도 실험, 2017~2018년 핀란드 실험,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의 사례 등 기본소득과 관련한 전 세계 실험이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Haarmann et al, 2009; Davala et al., 2015; Jones and Marinescu, 2018; Yi, 2018; Gilbert, Huws and Yi, 2019; Kela, 2020). 더군다나 노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특히나 개인적으로/사회적으로 흥미롭거나 보람 있거나 바람직한 노동의 경우), 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인정과 소속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비화폐적 보상, 삶의 의미와 재미, 흥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 고유의 본성 등을 감안할 경우,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에서조차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공급을 (크게) 줄이지 않을지 모른다(Gilbert, Huws and Yi, 2019).

진형익, 이미숙(2020)이 제시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도 이에 조응한다. 이들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9~64세 성인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조사 형태로 설문조사를 수행해서, 총 905명의 응답자료를 확보했다. 설문문항 중에는 “본인의 경우 매월 얼마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일을 그만둘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형익, 이미숙(2020: 그림 5)에 따르면, “본인의 경우 매월 얼마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일을 그만둘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본소득 지급액수가 월 50만 원 미만인 경우 1.2%, 월 50만 원~100만 원 미만인 경우 1.8%, 월 100만 원~150만 원 미만인 경우 7.2%, 월 150만 원~200만 원 미만인 경우 13.8%, 월 200만 원~250만 원 미만인 경우 16.5%, 월 250만 원~300만 원 미만인 경우 9.6%, 월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1.5%가 일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했으며, 28.4%는 기본소득 지급수준과 관계없이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비록 ‘intensive margin’(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얼마나 오래 일할 것인지)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extensive margin’(노동시장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응답자들은 세울 인상으로 인한 대체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효과만을 염두에 두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노동공급을 늘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묻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월 1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약 4%의 사람들만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결과는 기본소득 지급액수에 따른 노동공급 반응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총량적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노동공급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좋은 노동,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 그 자체로 매력이 있으며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노동은 장려하고 증가시키는 반면, 열악한 노동, 자신에게 맞지 않는 노동, 그 자체로는 매력이 없으나 화폐적 보상에 기초한 외재적 동기를 갖는 노동은 장려하지 않으며 감소시킨다”는 사실이다(이건민, 2020b, pp. 114-115). 이를 감안할 때, “기본소득은 탈노동 개념에 적합하다”거나 “기본소득은 탈노동을 초래한다”라는 식의 주장은 “(유급)노동을 단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지니며 “서로 다른 성격의 노동에 대해 상이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다(이건민, 2020b, p. 115).

끝으로, 비록 기본소득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기본소득의 해방적 효과가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완전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을 뚜렷하게 지향하면서 결국에는 기본소득의 충분성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훈(2020, p. 70)은 기본소득

의 충분성이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나는 기본소득이 ‘얼마 안 되는 돈’이 아니라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또다른 특징인 ‘충분성’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액수여야 한다는 뜻이다. 충분성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크다. 처음부터 충분한 액수를 고집하면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충분하지 않은 기본소득은 그 장점 대부분을 잃기 때문이다.”

6. 부분으로 전체를 흐드는 기본소득 비판에 관한 교훈: 기존 제도들의 ‘정명’ 개혁을 가능케 하는 기본소득, 그리고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할 이유

윤형중(2021)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환상일 뿐이며 증세를 동반한 기본소득도 단지 순수혜충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정치적 지지와 실현가능성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최한수 교수의 칼럼(2021)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전제를 잊은 채 결론을 일반화하거나, 기본소득의 일면만을 보고 비판하는 식의 기본소득 찬반 논쟁도 보다 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의 지적과 같이, 기본소득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서 비판론·반대론을 제기하는 방식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부분이나 지역적인 것으로 전체를 흐들고 자하는 방식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첫째, 양재진(2020a; 2020b)과 제갈현숙(2020, pp. 135, 139, 143, 147)은 기본소득이 ‘균등급여’이므로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균등급여’만으로 기본소득을 특징짓는 것은 기본소득의 일면만을 바라본 것이며,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비례적 또는 누진적 과세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미하므로 기본소득은 불평등 문제의 대안일 수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또한 소득불평등은 ‘절대적 소득격차’가 아니라 ‘상대적 소득비중’으로 측정되므로, ‘균등급여’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그 액수가 커질수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상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이건민, 2020a). 더 큰 틀에서 보자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유의미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튼튼한 1층으로 엮는 방식의 개혁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제도를 줄이고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유력한 방안이다(백승호, 2020).

둘째,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이루어지는/이루어질 수 있는 조정이나 개혁 중 일부분에만 주목하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방식이 발견된다(양재진, 2020a; 2020b; 제갈현숙, 2020). 제갈현숙(2020, pp. 138-139)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서 생계급여,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의 A값(균등부분)이 대체되는 방안을 문제시한다.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을 논하면서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지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A값 부분의 대체’뿐이다.⁸⁾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의도적으로) 간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합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는 가로막힌다.

더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생계급여 및 국

8) 비록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A값 부분의 대체 문제(기본소득 지급액수가 증가하더라도 전혀 대체하지 않을 것이나, 기본소득 지급액수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대체할 것이냐)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민연금의 A값 대체 등을 제안했던 것은 큰 틀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그리고 그러한 개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서 기존 제도의 ‘정명’ 개혁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완전고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이에 기반한 사회보험 제도도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해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Atkinson(1996) 등에 의해 적실히 지적된 바 있다.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은 전체 사회보장제도, 사회,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빈곤의 덫, 실업의 덫, 복지의 덫, 불안정성의 덫, 불확실성의 덫, 저축의 덫, 별거의 덫 등에 빠진 수급자 및 수급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⁹⁾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에 따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지지자들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를 이른바 복지국가(자본주의) 황금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보장제도의 ‘주’가 아니라 ‘부’가 되게끔 하는, 더 나아가서는 이에 대한 의존성을 상당히 줄이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부조제도의 기준을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선별과정의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면서 할당 대상의 범위와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적용한다면, 잔여주의적 속성을 탈각시킬 수 있다”는 제갈현숙(2020, p. 144)의 주장은 그의 기대와 같은 방식으로의 공공부조 개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에 역행하는 구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에서 1층의 기본소득 바로 위에 위치하는 2층에서 기존의 사회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백승호, 2020; 유종성, 2020)과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사회보험은 원래의 소득비례적(earnings-related) 속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세대 간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익비가 1이 되도록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자는 구상(유종성, 2020)은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각 제도의 ‘정명’을 찾으면서도 빈곤과 불평등,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층의 기본소득은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2층의 소득보험은 기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중산층을 비롯한 전 사회계층의 자신의 기여에 따른 소득 보장 욕구 충족 기능을 일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1층의 기본소득이 충분한 액수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가 기본소득과 함께 1층에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1, 2층이 안 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응당 이와 더불어 교육, 돌봄, 의료, 주거 등 사회서비스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백승호, 2020). 따라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A값을 대체하겠다는 구상(김교성 외, 2017) 역시 이러한 전체 그림 하에서 제시된 것이라는 점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A값 대체 그 자체만으로 보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다라도 기여 기간이 적음으로써 국민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포괄함으로써 현재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 잘 작동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소득비례적 성격의 강화 및 수익비 1로의 개혁은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줄임으로써 제도의 정치적 지지를 높이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존 사회보험의 소득보험으로의 전환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사회보

9) “진짜 불쌍한 사람만 지원하자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는 박정훈(2020)을 보라.

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부분으로 전체를 흔들고자 하는 방식이 발견된다. 전승훈(2020)은 안정적인 액수의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증세 방안, 비과세 감면 정비, 재정지출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각각 검토한 후, 단기기간에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짓는다. 그중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가 실제로는 결코 녹록치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승훈, 2020, pp. 153-154). 하지만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증세 방안에 대한 그의 주장과 논거에서는 그 자체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뿐더러, 여러 부분으로 쪼개어 유의미한 액수의 재원 마련의 불가능성을 논의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이 발견된다(전승훈, 2020, pp. 153-159).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그는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정 분야 재정 지출을 줄이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발표된 국방 중기 계획’, ‘한국판 뉴딜’ 등과 같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한다(전승훈, 2020, p. 153). 하지만 비록 단기기간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에 걸쳐 조세부담 중 공공사회지출의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재정지출구조 개혁만으로 GDP의 5%에 상당하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유종성, 2020, p. 98; 2021, p. 15). 소득세 증세와 관련하여, 그는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이 낮은 편이 아니고, 과표 구간 수도 적은 편이 아니”며 “지난 10년간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 부담을 빠르게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득세율을 증가시키는 증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전승훈, 2020, p. 157). 또한 “전체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증세” 역시도 “전체 근로소득자 중 40% 이상이 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세율 인상 등을 통해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한다(전승훈, 2020, p.158). 이러한 그의 주장과 논거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든 개인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강남훈, 2019; 유종성, 2020; 2021)은 면세구간 없이, 개인소득 중에서 누락되는 소득원천 없이 개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포괄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득세율 증가가 기본소득 지급과 연동될 경우 소득이 낮은 개인들과 가구들은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유의미한 액수의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단기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주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반박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기본소득 재원 모델을 하나 이상 제시하는 것일 테다. 그리고 이는 이미 강남훈(2019)과 유종성(2020; 2021)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행된 바 있다.

7.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관한 교훈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 구멍 나거나 낡거나 닳은 부분을 덧대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며 “현재의 복지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김공회(2020)나 양재진(2020a; 2020b) 식의 시각은 현존하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를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며 앞으로의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도 바람직한 형태로 마음껏 바꿀 수 있는 식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우리가 개별 사회복지제도가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제도’를 놓고 기본소득과 비교할 경우에는, 양재진(2020a, p.66)과 같이 “1/n로 모두 나누어 갖는 기본소득보다, 복지급여가 훨씬 후하”며 “복지급여 방식의 재분배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결코 일반화하여 용감하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기각은 반례 하나만을 들면 충분하다. 유종성(2020)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을 뿐더러 기본소득의 도입과 사회보험의 소득보험으로의 전환 등의 개혁 없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사각지대가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도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할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Yi(2020)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급여체계^{tax and transfer system}의 지니계수 개선율과 동일한 수준의 지니계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정률소득세-기본소득 정책^{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에서 요구되는 재원의 GDP 대비 비율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보다 더 낮음을 보인 바 있다. 다음으로 개별 제도 차원에서 향후 미래 전망을 해보더라도, 유종성(2020)의 지적과 같이 현존하는 사회보험은 소득보험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성과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현존하는 사회부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급층과 비수급층으로 이분화되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 정치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진다(Korpi and Palme, 1998; Gelbach and Pritchett, 2002; Kasy, 2018).¹⁰⁾ 게다가 수급 기준선 직전과 직후의 소득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의 발생가능성(유종성, 2020; Yi, 2020)으로 인하여 양재진(2020a; 2020b)이 사고하는 방식의 ‘두터운 지원’이 애초에 불가능할뿐더러, 소득역전 현상을 용인할 경우에조차 구직노력, (더 오랜 시간의) 노동참여 등 여러 가지 ‘조건성’이 따라붙기 마련이다(Yi, 2020).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그렇게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편적인 사회수당이 확대되지 않는 한), 단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빈곤 완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일 것이다.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과 평가에 대한 김공회(2020)의 시각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김공회(2020)는 삶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되었을 때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전면에 부상해왔으나 자본주의는 ‘임노동의 전면화’로,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으로 대응해왔음을 환기한다. 그리고 그는 ‘계급 투쟁의 장’으로서 복지국가는 ‘임금소득’, ‘국가의 현물성 복지서비스’, ‘공적 이전소득’ 등 삶의 재생산 전 영역에 걸쳐서 사고하고 개입한다는 점에서 ‘공적 이전소득’에 국한되며 이에 대해서만 사고하고 개입하고자 하는 기본소득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며, 앞으로의 복지국가는 현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시야와 해방성을 ‘공적 현금이전’에 국한시키는 것은 기본소득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에서만 그러할 뿐이다. 기본소득(의 시야와 해방성)은 현존하는 ‘공적 이전소득’ 자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임금소득’, ‘국가의 현물성 복지서비스’, ‘공적 이전소득’ 모두의 변화를 겨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시야와 해방성)은 생산과 재생산 영역 자체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사고 자체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노동, 생태, 젠더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삶의

10) 행정학과 교수임에도 기본소득과 현존 사회보장제도의 정책효과를 비교하는 분석에서 양재진(2020a; 2020b)은 ‘행정’을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을 매표를 위한 포퓰리즘 수단으로만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치적 요소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행복과 건강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추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언급에서 그나마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은 공적 현금이전에 속한다’뿐이며, 결국 당연하면서도 어찌 보면 굳이 언급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없는 문장만이 남는 셈이다.

양재진(2020)과 김공회(2020)는 모두 복지국가가 ‘무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기 이래로 규제 완화, 노동 및 사회 보호 후퇴 등을 통해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보편적 복지가 후퇴하는 대신 ‘고용중심적 복지정책’(홍민기 외, 2013)이 강화되어온 현실의 조건 하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침묵한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노동과 복지의 연계성을 한층 더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의 필요에 맞게 노동력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반면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왔으며, 기본소득은 이를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기획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와 파악 없이, “현재의 복지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단순히 주장하거나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와의 관계, 기본소득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행의 관계에 관한 임운택(2020)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제갈현숙(2020)도 이와 유사한 시각을 드러낸다). 우선 그는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를 대립적/경쟁적/양자택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노동의 권리’ 언급 시 ‘노동’을 ‘임노동’으로 특권화하고 있다. 노동의 형태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열악한 지위에 놓인 노동자들과 비자발적 실업자들, 무급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긴요하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Standing, 2011; 2017; 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Kasy, 2018). 기본소득은 ‘노동의 권리’ 보장에 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고,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는 상호배치된다는 사고,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와 ‘노동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힘과 권력, 정치에 대한 ‘영합 게임’ zero-sum game에 놓여 있으므로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사고 등은 낡았을 뿐만 아니라 해로울 수 있으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임운택(2020)이나 제갈현숙(2020)과는 반대로, Huws(2020)는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가 상호 도움이 되고 함께 해야만 하며 양자 모두가 21세기 복지국가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훌륭한 시각을 보여준다.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정치와 ‘노동의 권리’에 대한 요구/정치는 ‘정합 게임’ positive-sum game이자 동일한 방향으로 상호 강화되는 ‘양의 되먹임’ positive feedback 관계로 사고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개별적으로 노동과 소득의 분리를 어떠한 전제도 없이 관찰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은 도대체 누가 수행하는지와 같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임운택, 2020, p. 85)는 지적에서는 일종의 부당전제의 오류 내지 역설도 발견된다. 이것이 부당전제의 오류일 수 있는 것은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이론적, 실증적 증거는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해서 노동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을 ‘임노동’에 국한하지 않고 가사노동, 돌봄노동, 자원봉사활동, 생태·환경 보전 활동 등의 광의로 정의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이 역설일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행에 긍정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또는 많이 양보해서 최소한 중립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본소득이 도입된 상황에서 국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충분히 수행되게끔 역할하지 못한다면 기본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충분히 수행하게끔 역할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부당하거나 부정적인 전제, 대우, 가정을 미리 상정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충분히 수행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충분히 수행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최소한 어려워진다”라는 식의 논리는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는 양재진(2020a; 2020b)의 주장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양재진(2020a, p. 61)은 “원리적으로 기본소득은 ‘사회보장’ 급여이기 어”려우며, “현실에서도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로 인정받지 못”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계산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 복지의 원리를 ‘욕구 충족’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공유부 배당의 권리’와 ‘사회권의 실현’이라는 권리보장의 측면을 도외시한 매우 일면적인 해석일 뿐이다(백승호, 2020). 더불어 기본소득이 OECD의 공공사회지출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국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할 뿐이다.¹¹⁾ 무엇보다도 복지의 발달사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과 필요에 대응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면서 역사적으로 진화·발전해 왔음을 잘 보여준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Ch.3). 특히나 현재의 노동과 생태의 위기에서도 잘 드러나듯, 확률분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위험(risk)과는 달리 확률분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알기 힘든 불확실성(uncertainty)이 심화되는 시대에는 이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로써 기본소득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안효상, 서정희, 2020; Standing, 2020).

미래 사회보장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복지국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필자는 앞으로의 새로운 보편주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소득을 튼튼한 기초 위에서 생계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개인들의 삶을 토대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호성’(reciprocity)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 수행에 대한 식별이 선행된 후 권리가 부여되는 식의 ‘상호성’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권리를 우선 부여한 후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 수행을 기대하는 식으로의 전환 말이다. 이는 인류학자들이 강조하듯 부모 등 양육자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아기가 성인이 되어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것을 떠올려볼 때 인간의 성장과정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국가의 역할도 개인과 사회에 대해 모든 사안에 가부장적으로 개입하거나 넋지를 이용하여 변화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그럼에도 커버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와 과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행과 관련한 ‘보충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의 적용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미충족 사회욕구’(unmet social needs)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행을 일차적으로는 자발적인 개인과 공동체에 맡기고, 물

11) 정원호(2021)는 스위스 탄소배당 사례를 전국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례로 보고 있다. ‘사전 지급’의 형태가 아닌 ‘사후 정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주나 월 단위 지급이 아니라 연 단위 지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스위스 탄소배당을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는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하면서 스위스 탄소배당은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과연 타당하며 일관적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론 그 성격상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에서는 공공사회서비스가 맡으며, 이에 더하여 사회적 경제 부문이나 시장 영역에서도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참여소득이나 공공 일자리 등으로 대응하는 방식 말이다. 즉 “개인과 공동체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인 수행 가능성에 대해 미리 불신한 채 국가에서 과도한 역할을 떠맡고자 할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기본소득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미리 불신한 채 기본소득 없이 국가가 모두 잘할 수 있다고 자임할 것이 아니라(일자리보장은 이러한 입장을 끝까지 밀어붙인 구상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인 수행을 기초로 하여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시 국가에서 필요한 개입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전 사회적인 수행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기본소득 논쟁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한 이 글이 향후 기본소득 논쟁의 발전과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남훈(2010).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진보평론』 45. pp.12~43.
- 강남훈(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고양: 박종철출판사.
- 금민(2020a).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쟁점토론 1. 기본소득의 정의’ 발제문 수정본(2020. 7. 2).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금민(2020b).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지금 바로 기본소득』. 서울: 도서출판 동아시아.
- 김공회(2020).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기본소득(론)의 과거, 현재, 미래”. 『마르크스주의 연구』 17(3). pp.106~131.
-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2018).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민경, 남현정, 정명구(2020). 『1인 가구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절감 방안』. 서울연 2020-PR-11. 서울: 서울연구원.
- 김영순(2012).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영국스웨덴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46(1). pp.337~358.
- 김종철(2017). “기본자산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동향과 전망』 101. pp.106~134.
- 김종철(2020). 『기본소득은 틀렸다: 대안은 기본자산제다』. 고양: 개마고원.
- 김창근(2020). “좌파 자유지상주의의 공산주의와 기본소득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친-자본-반-노동적 성격 비판”. 『마르크스주의 연구』 17(3). pp.71~105.
- 도모히로, 이노우에(2019). 『모두를 위한 분배: AI시대의 기본소득』. 김소운 역. 파주: 여문책.
- 류보선(2020). “임박한 파국과 출구 - 혹은, 기본소득과 한국문학의 미래”. 『문학들』 61. pp.26~58.
- 류승연, 이승훈(2020). ““기본소득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지름길,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기본소득 논쟁 ① 찬성] 10년 전부터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오마이뉴스』. [6월 22일 기사입력]
- 문진영, 김윤영(2015).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Trade-off)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4). pp.203~226.
- 박정훈(2020). ““진짜 불쌍한 사람만 지원하자는 사람들에게 - 전국민고용보험 vs. 기본소득 논쟁은 허구다”. 『오마이뉴스』. [6월 23일 기사입력]
- 백승호, 이승윤(20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25(3). pp.37~71.
- 백승호(2020). “더 나은 기본소득 논쟁을 할 권리: 사회정책 분야의 논쟁 분석”. 『경제와 사회』 128. pp.12~56.
- 브레흐만, 뤼트허르(2017).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현실에서 만드는 법』. 안기순 역. 파주: 김영사.

서정희(2021).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기본소득론 관점에서 본 기초자산에 대한 고찰”.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자료집. 강은미 의원, 김두관 의원, 소병훈 의원, 용혜인 의원, 허영 의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 [1월 28일]

안효상, 서정희(2020).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 『산업노동연구』 26(3). pp.63~118.

알바레도, 파쿤도, 뤼카 샹셀, 토마 피케티, 이매뉴얼 사에즈, 게이브리얼 주크먼(2018).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장경덕 역. 파주: 글항아리.

양선형(2020). “No-knowing”. 『문학들』 61. pp.59~66.

양재진(2020a).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발전 요인으로 되기 어려운 이유”. 『경제와 사회』 128. pp.58~77.

양재진(2020b). “전 국민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와 한계 분석”. 『동향과 전망』 110. pp.26~59.

애커만, 브루스, 앤 알스토틀(2010). “제11장. 거시자유(Macro-Freedom)”.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자본 급여』. 너른복지연구 모임 역. 서울: 나눔의집.

유뱅크, 버지니아(2018). 『자동화된 불평등: 첨단 기술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가』. 김영선 역. 홍기빈 해제. 서울: 북트리거.

유종성 외 1인(2020).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11월 11일 version]

유종성(2020). “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보장 개혁의 방향”. 『동향과 전망』 110. pp.60~113.

유종성(2021). “기본소득과 조세-재정개혁”.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2021년 1차 토론회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향” 자료집. pp.14~30. [일시: 2월 23일(화) 오후 2시, 주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윤형중(2021). ““기본소득은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한 배에 태우는 아이디어”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 기고] 중산층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꿀 수 있는 기본소득”. 『프레시안』. [2월 25일 기사입력]

윤홍식(2017).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 54. pp.81~119.

이건민(2017). “기본소득의 역할’ 대 ‘불가능성 정리””. 서울: 녹색전환연구소. [3월 10일 공개]

이건민(2019). “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 『월간 시대』 74. pp.40~60.

이건민(2020a).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거짓말” - [기고]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기제 제대로 이해하기: 양재진 교수에 대한 비판”. 『프레시안』. [6월 15일 기사입력, 6월 18일 최종수정]

이건민(2020b). “제5장. 기본소득 쟁점”. In: 유영성 외 지음, 이한주 기획, 경기연구원 엮음,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서울: 다함미디어, pp.100~129.

이다희(2020).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는 일”. 『문학들』 61. pp.67~71.

이원재, 윤형중, 이상민, 이승주(2019).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솔루션 2050-04. 서울: LAB2050.

이일영(2020). “기본소득에서 기본자산으로: 동아시아형 뉴딜과 청년 기본자산제”. 『동향과 전망』 110. pp.114~150.

임운택(2020). “기본소득은 진정 노동의 해방구인가?”. 『경제와 사회』 128. pp.78~104.

임정균(2020). “마호가니와 공치조림”. 『문학들』 61. pp.72~78.

전승훈(2020).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 가능성 검토”. 『동향과 전망』 110. pp.151~162. [비정규 논문]

정상훈(2020). 『동네 의사와 기본소득: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김포: 루아크.

정원호(2021). “탄소중립 하려면 스위스를 보라 - [기고] 전국적 기본소득인 스위스 탄소배당 사례”. 『프레시안』. [1월 12일 기사입력, 1월 13일 최종수정]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18a). “이러타 111회-1부.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서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0월 30일 공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18b). “이러타 111회-2부. 세계불평등보고서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서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1월 1일 공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19). “이러타 151회. LAB2050 '국민기본소득제' 비판적 평가(설가타)”. 서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2월 4일 공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20). “이러타 169회. 정의당 ‘청년기초자산제’ 비판적 평가”. 서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5월 15일 공개]

제갈현숙(2020). “Covid-19 팬데믹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복지국가 재구성의 관점에서”. 『산업노동연구』 26(3). pp.119~157.

진형익, 이미숙(2020).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경제연구』 33(5). pp.1607~1629.

최한수(2021). “[세상읽기] ‘증세 없는 기본소득’, 비전 혹은 환상”. 『한겨레』. [2월 21일 등록, 2월 26일 수정]

- 홍민기, 홍백의, 윤자영, 박제성(2013).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Atkinson, A. B. (1996). “The Case for a Participation Income”. *Political Quarterly* 67(1). pp.67~70.
- B-MINCOME and Ajuntament de Barcelona (2019). Report on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e B-MINCOME Project (2017-2018): Combining a Guaranteed Minimum Income and Active Social Policies in Deprived Urban Areas of Barcelona. Planning and Innovation Department Area of Social Rights, Barcelona City Council. [July 2019]
- Coote, A., Kasliwal, P. and Percy, A. (2019). “Universal Basic Services: Theory and Practice – A Literature Review”. UCL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16 May 2019]
- Coote, A. (2021). “Universal Basic Servic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Sustainability: Science, Practice and Policy* 17(1). pp.32~46.
- Davala, S., Jhabvala, R., Mehta, S. K. and Standing, G. (2015). *Basic Income: A Transformative Policy for India*. Bloomsbury Publishing.
- Desai, M. and Palermo, A. H. (2019). “Some Effects of Basic Income on Economic Variables”.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Cham: Palgrave Macmillan, pp.91~110.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 Gelbach, J. and L. Pritchett (2002). “Is More for the Poor Less for the Poor? The Politics of Means-Tested Targeting”. *Economic Analysis & Policy* 2(1), Article 6.
- Gilbert, R., Huws, U. and Yi, G. (2019). “Employment Market Effects of Basic Income”.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Cham: Palgrave Macmillan, pp.47~72.
- Gough, I. (2019). “Universal Basic Services: A Theoretical and Moral Framework”. *The Political Quarterly* 90(3). pp.534~542.
- Groot, L. (2004). *Basic Income, Unemployment and Compensatory Justi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 Haarmann, C., Haarmann, D., Jauch, H., Shindondola-Mote, H., Natrass, N., Niekerk, I. V. and Samson, M. (2009). *Making the Difference! The BIG in Namibia. Basic Income Grant Pilot Project Assessment Report*, Basic Income Grant Coalition.
- Howard, M. W., Pinto, J. and Schachtschneider, U. (2019). “Ecological Effects of Basic Income”.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Cham: Palgrave Macmillan, pp.111~132.
- Huws, U. (2020). *Reinventing the Welfare State: Digital Platforms and Public Policies*. Pluto Press.
- Jones, D. and Marinescu, I. (2018). *The Labor Market Impacts of Universal and Permanent Cash Transfers: Evidence from the Alaska Permanent Fund*. NBER Working Paper No. 2431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angas, O., Jauhiainen, S., Simanainen, M. and Ylikännö, M. (Eds.) (2019). “The Basic Income Experiment 2017-2018 in Finland, Preliminary Results”. *Reports and Memorandums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9:9*. Helsinki: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 Kasy, M. (2018). “Why a Universal Basic Income Is Better Than Subsidies of Low-Wage Work”. Working Paper 2. Data for Progress. [9 November 2018]
- Kela (2020). “Results of Finland’s Basic Income Experiment: Small Employment Effects, Better Perceived Economic Security and Mental Wellbeing”. Kela. [6 May 2020]
- Korpi, W. and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pp.661~687.
- Mays, J. (2019). “Social Effects of Basic Income”.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Cham: Palgrave Macmillan, pp.73~90.
- Miller, A., Yamamori, T. and Zelleke, A. (2019). “The Gender Effects of a Basic Income”.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Cham: Palgrave Macmillan, pp.133~153.
- Miller, A. (2017). *A Basic Income Handbook*. Edinburgh: Luath Press Limited.
- Portes, J., Reed, H. and Percy, A. (2017). “Social Prosperity for the Future: A Proposal for Universal Basic Services”. UCL Institute for Social Prosperity.
-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 Standing, G. (2017).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London: Pelican Books.
- Standing, G. (2020). *Battling Eight Giants: Basic Income Now*. I.B. Tauris.



Van Parijs, P. and Vanderborght, Y. (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Yi, G. (2018).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Labour Supply".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4(1). pp.193~218.

Yi, G. (2020). "Seven Propositions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of the UBI-FIT Model". Paper for the 32nd Annual EAEPE Conference 2020, 2-4 September 2020, Online Event: The Evolution of Capitalist Structures: Uncertainty, Inequality, and Climate Change. [발표일: 9월 3일]